

제 248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 차 본회의(2020.5.12.)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	---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5. 12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5. 1.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5.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5. 1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중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신속히 군민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사용 용어로 변경 (안 조례 전반)
 - 가) 긴급 재난기본소득 ⇒ 긴급재난지원금
- 2) 이중지원 제한근거 삭제(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주현]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조례 전반에서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정부사용 용어로 변경 (긴급 재난기본소득 ⇒ 긴급재난지원금)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이중지원 제한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이중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신속하게 군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을 다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긴급히 재난기본소득”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제4조 조 제목 및 제1항, 제5조 중 “재난기본소득”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u></p>	<p><u>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거창군민에게 <u>긴급히 재난기본소득</u>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거창군민에게 <u>긴급재난지원금</u>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재난기본소득</u>”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경기회복 및 주민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긴급히 지급되는 현금 등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긴급재난지원금</u>”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경기회복 및 주민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긴급히 지급되는 현금 등을 말한다.</p>
<p>제4조(재난기본소득 지원) ①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u>재난기본소득</u>을 예산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u>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범위</u>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긴급재난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u>긴급재난지원금</u>을 예산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u>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u>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제5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u>재난기본소득</u>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p>	<p>제5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u>긴급재난지원금</u>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p>
<p>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4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p>	<p><삭 제></p>